

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68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3. 13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6. 3. 13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6. 3. 25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행정과장 이기동)

가. 개정이유

-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요청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요청을 반영하고,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성과평가 인용 조항 수정(안 제7조, 제14조)
- 2) 위촉위원의 구성비율 확대(안 제9조)
- 3) 성과평가 절차 간소화 및 평가 근거 확대(안 제9조, 제16조)
- 4) 위원 해촉 규정 신설(안 제10조의2)
- 5) 수탁기관 선정 결과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한 축소(안 제13조)
- 6) 감사 의무화 및 시정·문책 규정 신설(안 제18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2)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3) 협의
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개선의견[복지지원과-6762(2026. 2. 6.)호]

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결과		
<p>제10조의2(위원의 해촉)에 ‘7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’, ‘8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’ 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수용 <input type="checkbox"/>일부수용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불수용</p>	<p>제10조의2 제5호에서는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성폭력범죄 및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해촉이 가능함</p> <p>아울러, 특정 범죄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할 경우, 열거되지 아니한 중대 범죄나 비위 사실이 규정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으며, 이에 따라 해촉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불수용함</p>

4) 기 타

-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263호
- 예고기간: 2026. 2. 10.~2026. 3. 3.(21일간)
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가. 주요 검토내용

- (안 제7조, 제9조, 제14조, 제16조) 성과평가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성과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조문 체계의 정합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적정함.
- (안 제9조, 제10조의2) 위원구성 비율 확대와 해촉 규정 신설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, 투명성 제고하려는 취지로 조례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(안 제13조, 제17조)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한을 단축하고 지도점검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절차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부합함.

○ (안 제18조)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, 감사 결과 위법·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 및 문책 요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·감독 강화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나. 종합검토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 개선과 부패 예방 권고를 반영하여 민간 위탁사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,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3. 25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